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관리 공백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불가한 바,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제7호)
- 2)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규정 신설(안 제6조의4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함

2) 주요 내용

가)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1조의2제7호)

-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를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를 적용하여 신설함

나)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 규정 신설(안 제6조의4)

- 공동주택등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 등을 공공위탁 관리하고, 부족한 관리비용 일부의 공공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(2024.9.10.)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